

NCS 스마트 경비원 직무 기본교육A

■ 1차시 방비활동하기

*외곽시설물 경비의 대상

- 장벽
- 울타리
- 출입구

*창문경비에서 고려할 사항

- 외부침입이 쉽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창문에 대해서는 강화유리, 외부침입감지 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한다.
-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화재 방재 시스템도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
- 창문의 파괴 대비책으로 방호창문 설치, 이중안전유리 설치, 창살(차폐시설)설치 등의 방법이 있다.

*CCTV의 구성요소 중 대표적인 영상저장장치인 DVR(Digital Video Recorder)는 촬영된 영상을 디지털 방식으로 일정기간 저장하는 장치이다.

*침입감지센서중 자석 감지센서는 자력의 변화에 의해 스위치가 작동하여 경보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전원이 필요 없는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나트륨등은 수명이 연한 노란색을 띄는데, 노란색 빛이 흰색 빛보다는 먼지 등에 더 잘 투과되기 때문에 안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며, 먼 거리에서도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RF방식은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에게 정기권을 지급하여 검증된 차량만을 경계지역으로 유입하는 편리한 방식이다. 호스트 PC설치 시 차량의 입출 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외곽시설물 경비

- 울타리, 담벽 등은 시설물의 경계선을 나타내며, 재산권 행사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다.
- 지붕은 외곽시설물 경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므로 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
- 장벽은 경계구역을 한정하고, 외부침입을 제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형적인 특성을 지닌다.
- 허술한 인근 건물의 벽을 통해 침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벽에도 감지시스템을 설치한다.

*문틀경비

- 문틀도 문과 마찬가지로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고, 문틀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나사못의 사용보다 용접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문틀과 문 사이에 지렛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틈을 없애야 한다.

***경비조명의 점검**

- 조명설비는 설치된 현장에서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서부터 중앙에서 통제하는 관리본부까지 광범위한 점검과 유지보수가 요구된다.
- 전기회로 및 배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명작동 이상이나 합선으로 인한 화재예방까지도 항상 점검하기 위해서는 회로도 및 배선도 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 전기회로와 조명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전기회로와 배선에 있어서는 안전을 위해 전문전기기사에게 정기점검을 맡길 필요가 있다.

■ 2차시 인력출입 통제하기

***출입인력의 휴대물품을 검색하는 장비**

- 휴대용 금속탐지기
- 문형 금속탐지기
- X-Ray 검색기

***경비원이 피질문검색자와의 동행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사항**

- 상대방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증거를 인멸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자살 등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일반출입증의 발급대상**

- 경비대상시설의 상주인력
- 파견 및 지원 근무자
- 경비대상시설 해당업체장의 요청이 있는 자

***경비대상시설의 상주고객의 출입증 미패용 시 확인절차**

- 상주고객이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는 경우는 출입증을 분실한 경우와 소지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확인한 후 임시 출입증 신청서 작성하고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게 한다.
- 출입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확인 후 분실 신고서와 임시 출입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입증이 재발급되기 전까지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게 한다.
- 상주고객이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았을 시 경비원은 출입증을 올바르게 패용하도록 권고한다.

***업무적 방문고객 출입관리에 관한 내용**

- 업무적 방문고객이 방문출입증을 발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한 후 방문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한다.
- 업무적 방문고객은 우편이나 택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으로서 상주고객이 직접 수령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함과 택배함을 운영하여 불필요한 출입을 최소화한다.

-업무적 방문고객에 대하여는 출입관리 대장에 등록하여 출입 시 기록된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업무적 방문고객임을 확인한다.

-경비대상시설에서 우편 혹은 택배를 상주고객이 직접 수령해야 하는 경우 해당 방문 목적을 확인한다.

*일반 방문고객의 출입관리에 관한 절차

-일반 방문고객이 경비구역 내로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출입증을 발급받아 패용한 후 입장하여야 한다.

-방문출입증은 방문목적을 확인하고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발급받는다.

-방문 출입증의 뒷면에는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고, 경비원은 방문고객에게 준수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보안 구역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문 고객이 돌아갈 때까지 상주 인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우편, 택배 등 업무적인 방문객의 출입절차에 대한 내용

-우편이나 택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적 방문고객의 경우에는 일반 방문고객과는 출입관리절차가 상이하다.

-우편, 택배 등의 방문객의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자 관리대장을 두고 관리한다.

-상주고객이 직접 수령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함과 택배함을 운영하여 불필요한 출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VIP고객 출입관리절차에 대한 내용

-관련부서와의 협의 내용 및 경비계획서에 따라 상주 VIP 고객의 의전을 수행한다.

-상주고객 중 VIP 고객은 임원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전을 실시한다.

-방문 VIP 고객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일정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동선 파악 후 경비계획서에 따라 의전을 수행한다.

-상주 VIP 고객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출입 시의 의전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출입통제 중 발생한 문제의 처리 및 기록

-출입통제 업무 시 발생한 문제 처리 후에는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한다.

-출입통제 업무 시 발생한 문제 처리에 대한 기록 후에는 같은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한다.

-출입통제 업무 시 발생한 문제 처리에 대한 기록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에는 다른 경비원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경비원은 출입통제 업무 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처리 요령을 미리 숙지하여야 한다.

■ 3차시 순찰안전점검하기

*문제 발생시 처리절차

-출입통제업무 시 출입자와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즉각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을 한다.

-출입자와의 다툼이 발생하고 상급자가 해당 출입자를 대면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급자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경비원은 출입자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방문고객이 면회 또는 통화를 원할 경우에는 잠시 기다려 달라는 양해를 구하고, 관계부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안내한다.

*순찰의 사전준비사항 중 '일반적 사전준비 사항'

-방법용 설비 위치 등 확인

-순찰 시 착안사항(눈여겨 볼 사항) 등 습득

-순찰경로 등 확인

*정시순찰과 임시순찰에 관한 내용

-임시순찰이란 정시순찰 이외에 수시로 하는 순찰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태풍 시, 특별 행사 시, 공사 시 등 그 상황에 따라 적시순찰을 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임시순찰은 발화점검, 시정확인·점검 및 개폐 관리업무 등 일정한 시간에 따른 정형화가 필요한 순찰에는 적절하지 않다.

-경비원이 순찰시계를 휴대하고 순찰경로상의 중요장소에 설치한 타각용 열쇠를 사용하여 각각의 장소에 순찰시각을 기록하면서 순찰을 하므로 정확한 시간에 순찰장소를 빠짐없이 순찰할 수 있다.

-정시순찰이란 근무기준표에 따라 미리 정해진 시각에 정기적으로 하는 순찰을 말한다.

*순찰 시 보고의 상황 중 '유효성의 원칙'

-보고서는 업무의 통제나 방침결정 등에 효력을 가지는 가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하며, 보고를 받는 사람이 어떤 행동조치를 취하는데 곧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경비시설 내에서 경비원이 순찰 중 수상한 자를 발견한 경우 우선조치에 관한 내용

-야간에 질문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어두운 장소를 피하고 밝은 장소로 유도한 후 질문한다.

-시설 내에서 수상한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시설관리권에 의거 행선지, 용건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

-상대방이 답변을 거부하고 수상한 행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질문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을 둔다.

*순찰 중 수상한 차량의 점검·경계대상

-수상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적재물이 있는 차량

-전조등 등을 점멸하거나 경적을 이상하게 연속적으로 울리고 있는 차량

-차체에 피가 묻어 있거나 차내가 현저하게 어지럽혀져 있는 차량

*순찰 중 사건·사고 발생시 유관기관 연락방법

-긴급연락은 신중한 나머지 지연되는 것 보다는 졸속으로라도 빨리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락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고 명료하게 해야 하며 당황하여 했던 말을 중복하지 않도록 한다.

-순찰자는 경찰기관이나 소방기관 등에 적절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락방법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긴급연락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 등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추가 연락을 해야 한다.

*순찰활동 중 보고요령(안전위해요소 발견 시 또는 우발상황 발생 시)

-보고는 받는 측에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므로 6하 원칙을 활용하여 보고한다.

-보고는 보고자가 직접 목격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제3자의 전언이나 추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직접 목격한 사실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고한다.

-사건·사고의 직후에는 그 전모를 판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생사건에 대하여 우선 제1 보고를 하고, 그 후 조사나 관찰에 의하여 판명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보고한다.

-보고수단은 구두, 전화, 무전기, 서면 등에서 가장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되, 보고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보고한다.

■ 4차시 점검사항 조치하기

*난선순찰

-순찰노선을 미리 지정하지 않고, 순찰할 때마다 순찰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순찰노선을 선택하는 순찰을 말한다. 정선순찰 방법만으로는 오히려 다른 장소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순찰의 정형화와 경직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선을 적절하게 선정하여 실시하는 순찰을 난선순찰이라고 한다.

*순찰일지의 기재사항

-순찰일자 및 순찰시간

-순찰한 건물, 시설 등 순찰경로

-특이사항

*교대근무자에 순찰결과 인수인계시

-구두인계는 순찰자가 순찰활동 중 인지한 사실과 조치내용 등을 교대근무자에게 직접 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과 더불어 인간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구두인계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이 연결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인계를 하도록 한다.

-서면인계는 인계를 간소화하여 인계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자세한 기록을 통해 순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순찰활동 후 교대근무자에게 인수인계하는 방법에는 구두인계와 서면인계가 있다.

*경비구역의 순찰활동에 관련한 평가 내용

-특이사항이나 우발상황을 순찰 전 사전 준비의 철저로 예방할 수는 없었는지 평가한다.

-순찰자의 숙련 정도, 순찰자의 조치능력 뿐만 아니라 순찰장비의 문제가 없었는지도 평가한다.

-순찰공백 및 우발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순찰방법을 선택하였는지 평가한다.

-특이사항이나 우발상황 등에 대해 즉응조치는 적절했는지 평가한다.

***순찰일지 등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

-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람이 그 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 문서는 「국어기본법」에 따른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순찰활동 중 우발상황 발생 보고시 후속조치에 관한 내용**

- 최초 보고자인 순찰자는 상황이 진행되는 내용이 최초 보고한 내용과 차이가 크거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 보고를 통해 새로운 지시를 받도록 한다.
- 정확한 보고가 된 경우 상급자가 그 보고를 받은 후 상황 판단을 하여 내린 지시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 여러 후속조치가 지시된 경우 후속조치에 필요한 내용들을 중요도, 긴급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조치한다.
- 현행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능한 개인 단독에 의한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경우 경비원은 상황 본부에 보고하고, 현장을 감시하면서 동료나 경찰의 지원을 기다려야 한다.

***교대근무자에 대한 인계 내용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완결성'의 내용**

- 인수인계 시 누락된 내용 없이 다음 교대근무자에게 인계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순찰 결과의 평가 후 취해야 할 조치**

- 평가결과가 적절한 조치를 한 순찰자에 대하여는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조치를 하여 징계를 하는 경우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동일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반드시 도출하여야 한다.
- 순찰 결과 평가 자료를 통계처리하고 경비대상시설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고 연구하며, 이 연구결과는 순찰 업무 개선 및 사고 예방 자료로 활용한다.
-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사내 전산망 등에 게재하여 모든 순찰자가 열람하여 순찰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 5차시 혼잡상황 통제하기

***우발상황을 즉각 조치한 경우의 조치상황 보고**

- 상황의 보고는 이상발견 지점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장소에 있는 연락수단을 이용해서 신속히 행하여져야 한다.
- 6하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사실 그대로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중복·반복하여 설명하지 않도록 한다.

*행사의 성격에 대한 내용

-행사 주최 기관은 행사의 기본계획 수립 등 골격에 관한 일을 하며 행사 주관기관은 행사를 직접 집행하는 일을 맡는다. 주최 기관은 상급기관, 정부기관 또는 행사를 의뢰한 기관이 되며 주관기관은 하급 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 등 행사를 의뢰 받은 기관이 된다.

-초청 인사는 행사와의 유관정도에 따라 결정되 행사와 직접 관련되는 인사를 고루 초청토록 한다.

-행사의 뚜렷한 목표를 설정한 후 행사의 규모와 일시·장소·초청인사·진행·예산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수립한다.

-행사 명칭은 행사의 성격과 목적, 관련분야를 잘 나타내게 할 수 있도록 정한다.

*행사장의 위해상황 예측 및 경비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경비상황실의 적합한 위치는 소규모 행사장에서는 주 통로 부근이고, 대규모 행사장에서는 주요 건물들이 위치한 곳의 중간 부근이다.

-소규모 경비조직에서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비요원에게 소방 임무나 기타 다른 임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경비상황실은 행사장 경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통제하기 위한 거점이며, 경비 경보 및 통신시스템을 위한 단말지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통상적으로 행사장 경비팀의 편성은 경비 환경과 당해 행사일 전후의 위협 수준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혼잡상황의 관리에 관한 내용

-군중 통제와 군중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전자가 군중에게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후자가 개개인이 아닌 대중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군중심리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정서적 충동성, 추리의 단순성, 정서적 확장성, 도덕의 모순성 등이 있다.

-군중 관리에 있어 공연·행사를 집행하는 안전관리요원과 공연·행사에 참가하는 군중은 서로 다른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관리요원들의 수행 사항 중 하나인 군중 통제는 군중에게 지시 사항을 알려주고, 시설물을 안내하며, 위험지역이나 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으로 군중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수행한다.

*혼잡상황의 행동지침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와 사고를 예방한다.

-군중이 질서를 지키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분위기를 느끼게 되면 남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심리상태로 인하여 혼란상태가 발생하므로 질서를 지킴으로써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군중은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몰라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일정 방향을 향해 일정한 속도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킴으로써 안정감을 갖도록 한다.

-제한된 면적의 특정한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상호간에 충돌 현상이 나타나고 혼잡을 야기하게 되므로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피하게 한다.

*폭력 사범 제압 시 경비원의 행동요령

- 흉기를 소지한 자와 상대하였을 때는 불필요한 접근을 피하고 먼저 흉기를 가진 손을 단봉 등으로 타격해서 떨어뜨리게 한 후 제압한다.
- 상대를 완전히 제압·체포하였더라도 방심하지 않고 상대의 거동 또는 주위의 상황을 주의하여 도주와 저항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경비원이 실력을 행사하여야 할 때에는 재빨리 상대의 태도와 인원 흉기의 유무 등을 파악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경비원의 실력행사는 상대의 공격 내지 저항 또는 도주할 때 비로소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 기선 제압은 현행범 체포 등 법령상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행사장내 안전 사고시 조치

- 대규모의 소요사태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예비경비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혼란 통제, 군중 격리, 차단조치 등을 시행한다.
- 일부 군중들 간의 다툼이나 충돌인 경우 다툼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을 분리 구분하여, 혼란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격리조치하고, 즉각적으로 상급자와 행사 주최측, 그리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한다.
-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행위는 되도록 전문적인 응급의료 담당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급성 심정지에 따른 심폐소생술,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응급처치 등 당장의 긴급을 요하는 처치를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 다툼의 양 당사자를 격리 조치할 경우 경비원과의 2차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한다.

*행사장내 화재사고 발생시 경비원의 행동요령

- 관중이 일시에 출입구로 집중되지 않도록 침착한 상황 설명과 대피 안내를 실시한다.
- 화재발생을 인지하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화재발생을 보고한다.
-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합니다.
- 관중을 침착하게 출입구로 유도한다.

*행사장내 주차장 차량 접촉 사고시 조치

- 경비원은 사고 발생 초기에 관련자들이 주장하는 차량의 물적 피해, 부상을 주장하는 인적 피해 중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청취하고, 사진을 찍고 기록한다.
- 차량 접촉 사고의 경우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절대 가·피해 여부를 말하지 말아야 한다.
- 건물 지하주차장의 경우 지하 몇 층 무슨 구역인지, 노상주차장의 경우 몇 동 앞/뒤 어느 장소인지 등을 확인한다.
- 주차장 내에서 사고 차량들이 서로 주행 중 발생한 사고인지, 주차된 차량을 주행 중인 차량이 충격한 사고인지, 주차장 내 보행자를 주행 차량이 충격한 사고인지 등을 확인한다.

■ 6차시 교통질서 유지하기

***행사장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성격을 미리 파악하기**

-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여 행사의 유형과 성격,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한다.
- 1차적으로 행사와 관련된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다.
- 행사 주최나 주관 기관에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
- 자료를 통해 나타나지 않은 행사내용은 행사 관련자와의 면담이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다.

***업무적 방문 고객(우편배달부, 택배 기사)의 차량)에 대한 출입 관리**

- 업무적 방문고객의 차량이 방문차량출입증을 발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한 후 방문차량출입증을 반납함으로써 업무적 방문 차량에 대한 출입관리업무를 마치게 된다.
- 업무적 방문고객의 차량이 확인되면 방문출입증을 발급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차량 출입을 허용한다.
- 경비대상시설에 출입하는 업무적 방문 고객인 우편배달부나 택배 기사의 차량에 대하여 출입차량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출입 시 기록된 차량정보를 바탕으로 차량을 확인한다.
- 경비대상시설에 출입하는 업무적 방문 고객인 우편배달부나 택배 기사의 차량에 대해서도 방문목적을 확인한다.

***행사장내 차량 동선과 주차구역에 관한 설명**

- 차량 종류별 주차구역을 명확히 숙지한다.
-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기할 경우,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심각한 교통 혼잡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공연·행사 종료 후 주차장을 빠져나갈 경우 상대적으로 외부도로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주변의 교통혼잡이 적은 편이다.
- 각 주차구역이나 도로 구역에 산재되어 배치된 주차관리요원들 간에 실시간으로 차량주차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 진입 동선과 주차 차량이 원활하게 행사장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경비원의 차량 유도 시 주의사항**

- 차량을 유도하는 동안 혹시라도 상황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자에게 현재 상황을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 차량 유도를 해야 하는 길에서 길을 가로질러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가 많은 곳에서는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을 주의하면서 차량을 유도해야 한다. 차량이 먼저 지나가는 것보다 보행자가 먼저 지나가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좋다. 차량이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람이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길기 때문에, 차량에게는 언제나 시간상 좀 더 앞서도록 신호를 주어야 한다.
- 차량을 유도할 때 경비원의 위치는 차량으로부터 2미터정도 떨어진 곳이 좋고, 백미러나 룸미러 등으로 경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여야 한다.
- 경비원은 사각지대에 들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차량을 유도하면서 반드시 목소리를 내도록 한다.

***경비구역 내에서 차량사고 발생 시 경비원이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 조치 의무**

- 운전자는 사고현장에 의사, 구급차 등이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에게는 가제나 깨끗한 손수건으로 우선 지혈 시키는 등 가능한 응급조치를 한다.
- 운전자는 연속적인 사고의 방지와 다른 차의 소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엔진을 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조치 상황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현장 시찰에 관한 내용**

- 시찰 코스에 안내판 등 표지판을 설치한다.
- 현장 시찰은 시설물의 주요부분으로 한정한다.
- 시찰 코스 주변의 환경 정리와 각종 시설물의 정비, 근무 직원의 복장 등에 유의한다.
- 시찰 코스에 장애물이 있는 곳은 피하도록 한다.

***행사장내 출입 차량에 대한 관리내용**

- 비상시를 대비하여 응급차량 전용 출입구를 마련하고 이동경로 역시 별도로 설치하고 안전관리 요원 배치 계획도 세운다.
- 일반차량 및 버스 전용 주차장의 경우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고, 반사되는 안내표지판과 숫자/글자판을 부착하여 공연이 끝난 후 혹은 비상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일반 차량과 버스주차장은 주차공간의 크기와 동선 폭이 상이하므로 따로 분리하도록 한다. 대형 야외 공연 행사의 경우 주차장에서 공연 행사장까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본인 차량의 위치확인 및 이동 통로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연·행사관련 차량에 대한 별도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7차시 침입사고 대처하기

***경비 현장 침입 사고 발생 시 보안요원의 조치 내용**

- 경찰에 신고 시 정확한 침입 사건 발생 장소(주소), 확인된 침입자 관련 정보, 피해 시설 및 장소의 특성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1차보고 이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자세한 내용을 후속 보고 한다.
- 침입 사고 발생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경찰로 신고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 상급자에게는 경찰에 우선적으로 신고한 정확한 사건 발생 장소, 침입자 관련 정보, 경찰의 출동 여부 등을 구두로 우선 보고한다.

***신고를 통해 침입 사건을 인지한 보안요원이 신속하게 핵심사항을 특정해야 하는 내용**

- 침입자 관련 내용의 확인
- 목격자의 존재 유무 확인
- 정확한 발생 장소의 확인

***침입 사고 출동 및 침입자 발견 시 보안요원이 시행할 기본 조치**

- 다양한 침입 상황에 대응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허용된 장구를 휴대하고 출동한다.
- 부상자 및 응급구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출동한다.
- 보안요원이 침입자 또는 침입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는 때에는 되도록 직접 적인 대응 보다는 호루

라기, 목소리, 기타 다양한 경보장치를 통해 경보를 발한다.

-침입자가 언제든지 보안요원과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출동한다.

***형사소송법상에서 준현행범**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가 있는 때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보안업무 수행 중에 응급환자 발견 시 보안요원의 조치사항**

-응급환자 발생 상황을 상황실, 구급대, 상급자, 인근 보안요원 등에게 알리고, 필요시 지원인력을 요청한다.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한 구급대가 도착 시에는 응급환자를 인계한다.

-1차적으로 신속한 응급의료기관 후송을 도모해야하고, 필요한 때에 한해 직접 응급처치를 시행하도록 한다.

-환자의 보호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도 사실을 알린다.

***침입 사고 현장보존에 대한 기술**

-보안팀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보안요원을 현장보존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보안요원은 경찰이 침입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타인이 현장에 진입하여 증거를 훼손하지 않도록 타인의 현장접근을 통제한다.

-피해자 등이 부득이 현장에 출입할 경우에도 현장 내 물건 등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사전에 주의를 주도록 한다.

-사건 현장은 침입 장소 뿐만 아니라 전후 행동을 추정하여 가능한 넓게 설정한다.

***보안요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에 관한 내용**

-보안요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휴대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보안요원의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경비업법에 따라 보안요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으며,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

-경비업자가 보안요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응급상황 중 환자가 기도폐쇄 상황이고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의 응급처치순서**

-환자 뒤로 가서 양팔로 환자의 허리를 감싼다.

-한 손으로 주먹을 쥐어서 엄지 쪽을 환자의 명치 부위와 배꼽 가운데에 갖다 댄다.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싸 쥐고 빠르게 한번 위로 밀쳐 올린다.

■ 8차시 안전사고 대처하기

*통상적인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순서

- (1) 우선보안요원은 안전사고 발생 및 관련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한다.
- (2)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한 대상자를 확인하고, 부상 등 위해 발생의 정도 및 안전사고의 유형을 확인한다.
- (3)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직접적 당사자의 부상이 있는 때에는 소방기관 등 응급구호 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는 경찰기관으로 신속히 신고한다.
- (4) 보안요원은 현장의 1차적인 대응조치 후에는 즉시, 상급자 등에 보고를 하고 상황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

- 응급처치의 목적은 응급환자의 긴급한 상황을 해소하고, 짧은 시간 내에 회복하게 하여 이후 이어지는 수술, 치료, 재활의 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 의식이 없는 부상자의 경우에는 주변의 가족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를 가정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등 구호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문적인 자체의료팀·소방구급·의료진들이 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도폐쇄, 심정지 등 생명에 위중한 긴급 상황에 한해 보안요원이 직접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 부상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부상자의 동의를 받는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응급처치를 시행하려는 보안요원이 자신이 누구인지, 응급처치 훈련을 얼마나 많이 수행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부상자를 치료할 것인지를 설명한다.

*주차장 내에서 차량접촉사고 발생시 보안요원의 현장 확인과 관련한 내용

- 보안요원은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정확히 특정해야 한다.
- 사고 차량들이 서로 주행 중 발생한 사고인지, 주차된 차량을 주행 중인 차량이 충격한 사고인지, 주차장 내 보행자를 주행 차량이 충격한 사고인지 등 접촉 사고의 유형을 확인한다.
- 경비대상시설내의 차량 사고의 경우 때론 보험계약 관계에 따라 시설 측에서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보안요원이 직접 보상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기 보다는 외관상 확인되는 사항,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행동 등을 기록하는 수준에 그치도록 한다. 이는 사후 보상 업무 발생 시 귀중한 초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보안요원은 가해자, 피해자의 구분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상황보고서의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 사항에 포함될 항목

- 안전사고 발생 후 시간대별 조치 상황
- 목격자, CCTV의 확보 여부 및 확인 내역
- 안전사고 발생 대상자의 부상 및 피해 정도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 질병(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

-(가)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나) 일사병

-(다)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라)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마)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죄의 문제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의 내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의 민사책임은 면제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 받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제가 아니라 감면 받는다.

-본 조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한 면책에 관한 규정이다.

*보안요원이 현장 상황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안전사고 현장 증거 보존 조치의 일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직접적 대상자 외에도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목격자 등 주변인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한다.

-안전사고 대상지역을 촬영하는 CCTV가 경비대상시설 소유인 경우에는 보안팀에서 직접 CCTV를 확인하고, 멸실·훼손·각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안전사고 대상지역을 촬영하는 CCTV가 임차인 등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보안팀에 관련 사항을 알리고, 보안팀의 관리자가 해당 CCTV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영상을 확인하고 확보하도록 조치한다.

-안전사고의 직접적인 대상자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술을 청취한다.